

울산광역시 중구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기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23
----------	------

발의연월일 : 2025. 5. 29.  
발 의 자 : 문기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홍영진

1. 제정이유

중구 내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 선정(안 제4조 ~ 안 제6조)
- 라. 교육 (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5. 참고사항

- 가. 조례안 예고: 2025. 5. 16. ~ 5. 23.(7일간) / 의견없음
-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울산광역시 중구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이란 재활용품을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생계를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하절기·동절기 및 우천 시 건강보호를 위한 의류, 신발 등 필요 물품
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물품 및 장비
4.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 구청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안전과 보호,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1】

## 관 련 법 령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 [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울산광역시 중구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조례 등의 시행에 따라 의무적·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의 시행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실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비용추계 대상이 보안을 요하는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
4.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2.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3. 작성자

- 소 속: 노인장애인과
- 직 급: 지방행정주사
- 이 름: 최인숙
- 연락처: 290-3611